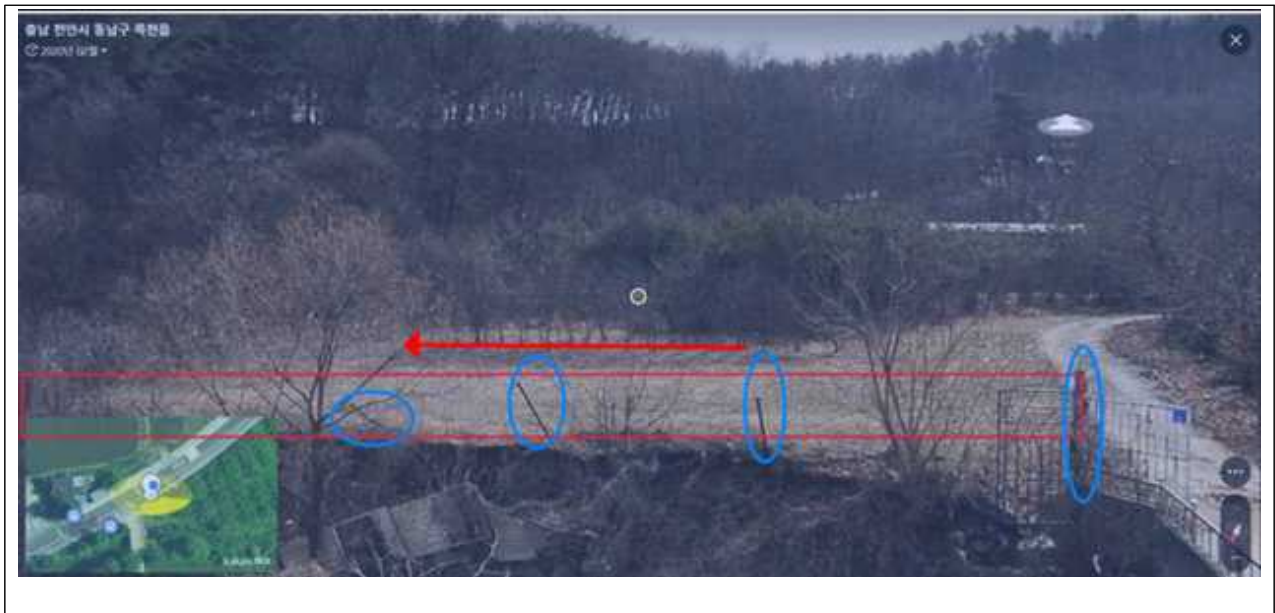


텃밭가꾸기(귀촌)의 꿈을 유린한 천안시청(동남구청, 목천읍), 동남경찰서

저는 충남 천안시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전업주부(57세)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농사를 지어 어릴 적부터 열심히 돕던 추억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 텃밭 가꾸기가 소원이었고,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던 남편(올해 9월 말퇴직) 또한 같은 희망이어서 2021년 2월경 네이버 부동산 광고를 보고 중개업자와 연락하여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로써 저희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저의 아파트에서 9km 지근거리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소재한 밭(194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밭 위치는 아래 사진에서 왼쪽 화살표 방향으로 깊숙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이전 토지주가 외지로 나갔는지 오랜 세월 경작을 하지 않은 지목이 정식으로 밭입니다. 밭 출입은 이웃토지주가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 대형 철문을 설치한 좌우로 다시 철봉(높이 3m)을 연이어 설치하고 그사이를 철조망을 쳐두어 그곳을 통과하여 가지 못하였고, 철조망 밖 소하천 쪽도 하천 벽면이어서 다리 아래 하천바닥을 걸어서 드나들었습니다.





저의 밭으로 향하는 방향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철문 좌우 하천부지가 쌍둥이처럼 같은 형태와 지형이고 수 미터 간격으로 철봉이 설치된 가운데 사진에는 안 보이나 철봉과 철봉 사이에 빈틈없이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철문 왼쪽 화살표 방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철조망 안쪽은 이웃토지주의 소유가 너무도 분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부분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미미한 경사에 길고 널따란 평면이었습니다. 현 이웃토지주는 연로하여 아들(이하 ‘아들’이라고 함)이 모든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밭을 매입한 직후 측량한 결과 이웃토지주의 철조망이 저의 밭 경계 안쪽으로 약 1.5미터 가량 연이어 들어와 있어 아들에게 철조망을 물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더니 뜻밖에도 ‘알아서 하라’고 하므로 다시 정중히 설득한 끝에 철조망을 물려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원래 하천부지 위로 넓은 길이 있었고, 그 길이 목천초등학교 가는 지름길이어서 지금의 다리를 놓기 이전에 그 부근 하천에 난 작은 다리를 건너 하천부지로 난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지 마을 앞 신작로는 읍까지 매우 우회하는 길인 데다 귀한 어린 자녀나 손자들을 위험하게 하천 밑을 걸어서 통학하게 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흔적도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의 밭 아래쪽 옛길 흔적으로 목천읍에 이르는 마을 앞 신작로는 매우 우회하는 길이고, 본건 통행로는 직선 길이어서 지름길이 맞음

저희 부부는 위와 같은 사실들과 과거 이웃토지주(수년 전 작고한 아들의 부친)가 저의 토지 안쪽을 꽤 많이 차지하며 철조망을 임의대로 설치한 사실과 철문 좌우 지형과 지도를 유심히 비교해본 결과 철문과 철조망이 국가소유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문과 철조망의 설치 상태를 보면 훗날 20년이 지나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소유로 할 강력한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실지로 아들이 나중에 저의 남편과의 대화에서 철조망을 친지가 오래되어서 자기네 땅으로 가질 수도 있는데 철조망을 물려서 선심을 써준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늘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과거 이웃토지주는 토지를 매입한 후 넓은 토지 중 밭 또는 논이었으나 일부를 목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었고, 그 무렵 철문, 철조망 설치 그리고 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여러 과정에서 천안시청(동남구청, 목천읍)의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법점유 사실을 알고도 방조, 묵인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러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등 부패한 행정이 훗날 이 사건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현 이웃토지주는 저의 밭 방향 하천부지와 경계를 이루는 토지(이하 ‘경계토지’라고 함)를 비롯하여 이와 연이은 그 일대 여러 필지로서 놀라 입이 벌어진 만큼 방대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의 남편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법점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측량으로 드러난 사실은 철문과 철조망이 다리 끝 지점에서 철문 좌우 연이어 무려 약 5미터에 이르는 넓은 국가소유 하천부지를 포함하여 설치하여 불법점유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형 철문, 철조망을 설치한 방식으로 보아 강력한 소유 의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부부의 시청에 대한 민원제기가 국가가 잃을 뻔한 철문 좌우 넓은 면적의 하천부지를 제 위치로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측량결과 대로 철문과 철조망 이동을 미루다가 2021년 7월 말경 철문을 다리에서 약 5미터 이격하고 철조망 또한 연이어 이격(이때 철봉 및 철조망 높이를 1미터 조금 넘게 절단 변경)하는 공사를 하면서 저희 부부가 민원을 제기하여 생긴 일이라며 크게 앙심을 품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하천부지를 처참히 훼손했습니다.



하천부지를 마구 파헤치고 하천벽면 바위들을 옮겨 훼손함



하천벽면을 마구 파헤쳐 하천관리를 무력화 시킴



하천부지의 토사와 벽면의 바위를 이격한 철조망 안쪽으로 가져감



저의 밭에 진입하는 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험하고, 위험하게 조성함



훼손한 하천부지 반대편 철문 오른쪽으로 평면 상태, 그 반대편 철문 오른 쪽 공간 안쪽에 행여 임시 주차라도 할까 봐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입구에 왼쪽 하천부지를 훼손한 토사를 옮겨다 쌓아 놓음



철문 오른쪽 안쪽 지형임(훼손한 하천부지는 이와 쌍둥이처럼 닮은 지형이었음)

천안시청(동남구청, 목천읍)에서는 아들이 임의대로 하도록 사전 사후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다가 저의 남편의 민원제기로써 훼손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아들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긴 하였으나 사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상복구는 시늉만 하였기에 고발이 당연함에도 그 상태로 묵인해주고 넘어갔습니다.



시늉뿐인 원상복구 모습(비가 한 차례 온 직후 사진)



시늬뿐인 원상복구 모습(비가 한 차례 온 직후 사진)



시늬뿐인 원상복구 모습(비가 한 차례 온 직후 사진)

원래 없던 배수관으로 이웃토지주의 아들이 하천부지를 훼손하면서 고의로 그 길이를 짧게 매설하여 배수관 주변, 특히 끝부분 토사가 심하게 유실됨

이때부터 저희 부부는 밭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팔을 걷어 부치고 사활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맨손으로 추가 토사유실 방지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부지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지고 남겨진 크고 작은 돌들을 하천부지를 튼튼히 지탱해주기에 적절한 위치에 옮겨놓고 발로 밟아 다져나갔습니다. 이후 비가 올 때마다 하천 훼손으로 인하여 조성된 경사면으로 인하여 빗물이 지면을 부딪치는 힘이 분산되지 않고, 유속에 속도가 붙어 추가 유실이 지속되어도 속수무책이던 중 저희 부부에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기간 다리 위로 떠내려와 넓고 두텁게 쌓여 있는 토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토사를 옮겨다 하천부지 위 경사진 곳과 파인 부분을 메꾸고 다지면 더 이상의 토사유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리 위로 흘러 내려와 쌓여 있는 대량의 토사



추가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하여 다리 위 토사를 모두 옮겨다 평면되게 깔고 다짐 (우측 적색 선 표시 부분은 이웃토지주와의 분쟁을 피하고자 일체 손대지 않고 충분히 간격을 두고 철조망 구간 전체 연이어 이격하여 작업)



같은 모양의 배수관을 구입(적색표시 연결부), 이를 연결하여 하천 아래 방향으로 충분히 멀리 물이 내려가도록 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함

이후로도 추가 유실방지를 위하여 온갖 정성을 들여 관리한 덕분에 비가 내려도 지면에 부딪치는 비의 힘이 분산되고, 빗물이 평면으로 흠어져 유속이 느려지는 효과로 토사유실이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의 발 입구에 이르는 쪽의 하천부지 벽면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편이어서 큰비가 올 때 토사유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더 두고 볼 수 없어 이곳에는 저의 발에서 나온 돌을 가져다가 파인 부분을 메우고 흙을 채워 넣어 굳게 다진 후 부직포를 구입하여 보호하고 이후로도 온갖 정성을 들여 관리하여 이곳 또한 추가유실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 부부는 말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법들을 준수하고, 농막도 법 규격대로 하면서 (컨테이너가 아닌) 천막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밭을 가꾸었고, 하천에 떠내려온 쓰레기도 수시로 수거하여 청소하고, 아끼고 깨끗이 유지했습니다.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대추, 감 묘목







위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던 중 2022년 10월 5일 남편이 천안시청에 하천부지 중 가장 취약한 곳(부직포로 덮은 약10m 구간)에 대하여 알려주고 보강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곳 하천부지의 추가 유

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온 결과 그 일대 하천부지 상태를 손금보듯이 잘 알게 되어 비가 오면 추가 유실에 따른 붕괴위험이 있는 지점을 잘 알게 된 것이어서 이를 알리고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시 신문고 민원입니다.

제목	하천부지 정비공사 요금구간(약 10미터 내외) 우선 공사 요청
염려스런 나머지 하천부지 유실부분 중 추가 유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약 10여미터 구간([REDACTED] 번지 경계 하천부지 상부에 부직포를 덮어 응급조치 해둔 상태)만이라도 우선 정비공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현장에 가보시어 부직포로 덮어놓은 곳 주변을 직접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하천부지가 다른 부분 보다 심하게 유실되어 하천부지 상부가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가파르게 절벽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부직포로 덮은 바로 하단 부분 풀들에 가려진 안쪽 벽면을 관찰해보시면 더욱 생생히 아실 것입니다. 특히 취약한 상태여서 앞으로 빗물 또는 작은 충격 등에 영향을 받으면 언제라도 쉽게 추가 유실이 될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나머지 우선 응급조치로써 부직포를 덮어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이 언급한 약 10미터 내외 구간만이라도 우선 정비공사를 해주십시오.	
2022. 10. 5.	
처리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0-0201726
접수일시	2022-10-06 21:16:02

이후 큰 비가 내리지 않고 겨울이 되었고 담당자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이 없어 올해는 그냥 넘기려나보다 생각하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는 결빙 상태에다 비 대신 눈이 내릴 것으로 추가 유실이나 붕괴 위험은 없을 것이기에 봄이 되면 다시 민원을 신청하려고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2022년 12월 1일 시청에서 민원내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민원의도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 포크레인을 들어 마대 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지목한 곳은 어디까지나 부직포로 덮어놓은 10여미터 구간 하천부지 벽면일 뿐인데 이곳은 제대로 손도 대지 않고 원래부터 매우 튼튼하고 두텁게 언덕지

고 오랜 세월 뿌리가 강한 갈대와 수풀의 뿌리들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엉뚱한 언덕 부분과 그 하단부를 깊게 파헤친 흙을 마대에 담아 다시 파헤친 그곳에 놓은 임의대로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아무런 쓸모도 없는 마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들인 공사인데 저희에게 사전 통보도 전혀 없었고, 그 어떤 언급도 없다가 임의대로 갑자기 그런 엉터리 공사를 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아무렇게나 자기 편한 대로 해버린 것을 보면 담당 공무원의 사전 사후 관리감독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그 하천부지는 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이미 겨울이 되었으니 서두르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토사를 새로이 유입하여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에도 토사결핍 상태라서 문제인 하천부지에 있는 토사를 마대에 담아 이런 엉터리 공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하천부지를 심히 훼손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대 공사를 한 중점 부분(적색 박스)은 하천 벽면과 전혀 상관도 없는 방향이고 보강요청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튼튼하게 유지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그곳을 파헤친 토사를 마대에 담아 다시 그곳에 놓아 눈가리고 아웅식의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하천부지만 추가로 훼손시키는 엉터리 마구잡이 행정을 하였음

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토사를 마대에 담으면서 이웃토지 철조망 하단부를 긁어서 생긴 토사를 담느라 이웃토지주가 설치한 철봉이 뽑히거나 철조망이 흔들리는 곳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들이 분명히 문제삼을 것으로 보여 시청에 이를 자세히 알리며 그 부문 원상태로 보강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실지로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온다고 하여 저희 부부도 나가서 맞이한 후 그곳 사정을 알려주고 특히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아들이 철조망 상태를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고 그 여파가 저희에게도 미칠 것 같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의 남편이 알린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입니다.

제목 하천공사 관련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날 포크레인 공사를 하면서 [REDACTED]번지 토지와 하천부지 경계면에 연이어 설치한 철봉 중 일부가 아예 뽑혀버리거나 거의 뽑혀 있거나 뽑히려는 것들이 있었고 철조망이 연이어 거의 모두 지면에 봉 뜨게 되어 토지주가 의도한 그 시설물의 역할에 매우 반한 상태로 변경이 가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바랐던 [REDACTED]번지와 하천경계에 연이어진 하천벽면 중심의 정비공사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식의 공사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철봉 및 철조망 시설물은 이웃 [REDACTED]번지 토지주가 설치한 것이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REDACTED] [REDACTED] 위 철봉 및 철조망이 심하게 변경된 상태를 알게 된다면 역정을 낼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의 민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하여 저에게도 이를 발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침착하고 친절하고 냉정하게 대하여 서로의 감정이 나빠지지 않도록 처신하겠지만 아무래도 바로 이웃토지주다보니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토지주가 봄, 여름, 가을에는 가끔 다녀가고 겨울에는 거의 잘 다녀가지 않아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이로 인하여 새로운 민원과 분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천벽면 추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평탄작업이었다면 그 하천부지 자체의 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토사를 유입하였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한번 나가보신 후 최소한이나마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리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2-0143986
접수일시	2022-12-05 22:32:08

저희 부부는 그런 식의 마대 공사를 하리라고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관계당국에서 알아서 엉터리로 마구잡이 공사를 하여 오히려 하천부지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잘못이 있음에도 마치 저희이 그런 행

위를 한 것인양 공사 현장 사진을 첨부한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 원상복구하라는 적반하장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 동남구



수신 [redacted] 귀하

(경유)

제목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 통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천안시 동남구 옥천읍 [redacted] 일원 소하천구역 내 토지의 굴착, 성토, 점용 등의 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지않은 불법행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2022.12.26.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남구 건설과 하천관리팀(☎041-521-43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천안시 동남구청장인



주무관	[redacted]	하천관리팀장	[redacted]	건설과장	[redacted]	전송 2022. 12. 12.
첨조자						
시행 건설과-26168	(2022. 12. 12.)	접수				
부 3113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문화동, 동남구청)	/ www.cheonan.go.kr				
(문화동)						
전화번호 041-521-4367	팩스번호 041-521-4429	/ ghdudddn55@kor.kr	/ 비공개(6)			
"개인정보는 이음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1/1

이에 대하여 12월 16일 제가 그 마대공사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답변)서’를 제출하였더니 그 직후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토록 엉터리 행정을 해놓고 죄송하게 생각하거나 반성하는 언행은 전혀 없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는 말이 전부였고, 그 이후 관련 민원에 대하여 매사 같은 태도를 보여 당시 적반하장의 공문까지 보냈던 사실을 상기시켰더니 그때서야 이 부분은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동남구청에서 저희 부부가 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도 이런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천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잘 알게 된 것은 각 당국과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소양은 천안시청을 중심으로 동남구청, 목천읍 담당자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연락과 협조 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하천 인근의 농민 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건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는 아들이 그토록 안하무인으로 하천부지를 파헤친 것도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것 모두 관계당국과 공무원(특히 말단보다 상급자들)에게 원천적인 문제가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저의 정당한 요청일 뿐만 아니라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매우 기본적이고도 절실한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엉터리 공사를 하고 사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적반하장의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가 우려한 문제가 현실로 발생했습니다. 문제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중 2023년 3월 9일 밭에 갔다가 하천부지를 2차로 파괴하여 토사유실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시 경사면이 조성되고 저의 밭으로 갈수록 마구 파헤쳐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그 상황입니다.



철조망 아래로 파헤친 토사를 옮겨 과도히 높게 하면서 경사면을 조성하고,
저희 발으로 향할수록 험하고 위험하게 조성해놓음



토사를 파서 철조망에 과도히 쌓아 경사면을 조성하여 저의진입로
끝부분까지 위험하게 만듦



경사면에 큰 바위가 드러나게 하고 언덕지게 만들어 위험을 증가시켜 놓음

저희 부부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목천읍에서 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목천읍 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다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3~4일 후 전화를 걸어와 ‘목천읍에서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그때 처음 얼굴을 본 것이었고, 대화도 처음 나눈 것이었는데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그 언행에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훼손한 하천부지는 원래 자연 그대로 또는 훼손 직전 상태에서는 저의발 경작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이를 훼손한 것은 밭 경작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소하천부지를 처참히 훼손한 것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소인을 특정하고자 저의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이와 같이 훼손하는 공사가 진행될 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책임은 천안시청에 있다며 거기에 물어보라고만 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한 충격적인 말은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이전처럼 하면(토사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천을 정성껏 관리하면) 또 그렇게 훼손해버리겠다는 식의 말을 하며 엄포를 냈습니다. 이에 고소 이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문제는 아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천안시청에 떠넘기는 상황이고, 목천읍 담당자는 목천읍에서 했다고 인정하므로 피고소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하여 특정될 부분이어서 피고소인 표시를 부득이 **‘성명불상(고소인 소유 토지 유일무이 진입로 및 하천 훼손을 결정 또는 실행한 사람들)’**이라고 기재하여 2023년 3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사건 성격상 우선 현장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미동도 하지 않으므로 2023년 3월 31일 조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현장증거부터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다녀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고 4월 11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과 내용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조사담당이 고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느낌은 물론 태도나 질문 내용도 저에게 불리한 방향을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엉뚱한 질문만 하여 조사받는 내내 억울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맹지 매입한 거 맞죠?’**라고 묻기도 했고, 진술조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었지만 피고소인을 처음부터 **‘목천읍장’** 한 사람으로 못 박아 놓고 질문하였고, 그중에서도 **‘문 : 그럼 그 하천부지를 사용하거나 점용하는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은 부분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문 : 그럼 그 하천부지를 사용하거나 점용하는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논두렁길이지 굳이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제 토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였습니다.

저의 답변을 적은 것도 엉터리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타인의 논 두렁길을 걸어 다니듯이 하천부지를 지나다니는 것인데 그런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라고 답변을 했는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양 답변 첫마디에 강조하듯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사받는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희 이 사건 말고는 그때까지 민형사상 그 어떤 소송도 제기한 적이 없고, 받아본 적도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조사방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회 민원제기에 천안시청, 동남구청, 목천읍 담당자들도 모두 사용, 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무조건 뚫개고, 저희 부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처참히 훼손된 철문 왼쪽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철문 오른 쪽은 원래부터 차를 임시로 댈 수 있는 공간이나 아래로 길게 늘어진 밤나무 가지 2개 때문에 불가능 하여 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만이라도 전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음에도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존재하던 철문 왼쪽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를 그저 걸어다니는 것도 허가를 받으라고 했고, 철문 오른쪽으로 원래 있던 하천부지에 임시로 주차를 하는 것도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없던 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도, 없던 주차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한 적이 전혀 없는데 저희 부부는 입만 병긋해도 조롱하며 모두 ‘허가’를 받으라며 목살했습니다. 그들이 저희 부부를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했는지 그런 내용은 굳이 이곳에 담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분하고 서러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저변에는 분명히 동네에서 저의 남편이 공무원으로 현직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귀에 들어간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홀벌이로 말직이나마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다 하위 6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로서 여생을 농사지으며 보내기로 꿈꾸며 우선 작은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힘에 부치지 않을 만큼 더 매입하여 전업 농부로서 생계

에 보탬이 되고, 건강도 챙길 목적이었는데 동네 일부 주민의 시기와 질투, 공무원들의 차별과 표적행적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 ○○○가 가장 심하여 저희 부부가 토지 투기를 하는 사람인 양 대했고, 조롱, 무시적 태도, 엉터리 행정으로 일관하여 그 서러움을 생각하면 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담당자는 모두 이제 공직에 막 발을 들여놓은 듯한 매우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은 나이가 꽤 들어 보였고 언행으로 보나 나머지 두 담당자의 이해할 수 없이 태만하고 소극적인 존재감으로 보나 ○○○은 그 지역, 그 분야의 터줏대감처럼 보였고,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보이지 않는 언행을 마구 했습니다. ‘경매로 사지 않았느냐?’라면서 마치 저희 부부를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실로 문제시되는 언행을 여러 번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했으나 동문서답, 뭉개기, 시치미로 일관하며 조롱과 무시를 지속해왔습니다.

훼손 이후 저희 부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저희 부부를 표적 삼아 경사면을 조성하지 말라고 그토록 여러 번 애원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고 조롱과 멸시로 일관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여름에 접어들어 비가 오면서 곳곳이 유실되고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2023년 7월 초 현장



유실 부분 위 금이 간 부분으로 언제라도 추가 유실을 앞 두고 있는 상태



저희 남편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한 10미터 구간이 정확하게 가장 심하게 붕괴되었고 유실 토사는 하천 아래로 쓸려 내려갔음



하천부지 유실부분 하부 내면에 위치하면서 지면을 지탱하고 있던 돌과 바위들이 붕괴 토사와 함께 하천바닥으로 낙석됨



하천부지를 지탱해주고 있던 큰 돌들이 돌출되듯 드러난 이유는 이웃토지주의 아들이 조성해놓은 경사면과 굴곡진 하천부지를 빠르게 흐르는 물에 의하여 주변 토사를 유실하였기 때문, 앞으로 폭우 때마다 반복 가중되어 붕괴에 이를 것임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궁색하고 다급했는지 천안시청(동남구청, 목천읍)에서 8월 5일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 대한 표적, 차별, 부패 행정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 공사를 마칠 때는 저의발 입구 쪽에서 보더라도 포크레인이 용이하게 오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복구되었고, 하천부지 입구쪽에도 정상적으로 복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8월 5일 공사를 마치고 포크레인이 빠지는 모습



8월 5일 공사를 마치고 포크레인이 완전히 빠진 모습, 넓은 평지로 복구되었음(철문 왼쪽 하천부지 입구에서 저의 발 방향으로 본 모습)

이렇듯 공사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 될 것을 다음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다음 날인 8월 6일 휴일인 토요일 공무원들은 아들의 의사를 전폭 수용하여 저

희 부부를 표적, 차별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몰래 하천벽면에서 하천위 부지방
 향으로 최대한 경사를 만들고 이웃토지주의 경계 철조망 하단에 넓고 높게 제단
 처럼 형성하여 손수레조차 지나지 못할 정도로 공간을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았
 습니다. 아들이 써왔던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좁힘과
 동시에 비가 올 때마다 유실되도록 하고, 예산낭비까지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단처럼 형성한 부분은 저희 부부가 불편한 나머지 본능처럼
 이를 펼쳐 길을 넓히면 하천부지 훼손으로 몰아 보복하기 위한 포석을 둔 것으
 로 마치 짐승이 다닐 길에 뿔을 놓거나 함정을 파놓은 효과도 노리고 있었습니
 다. 이러한 지능적이고 기만적 행정에 항의하였으나 모두 동문서답 뽕개고, 무
 시와 기만적인 답변이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8월 6일 토
 요일 저희 몰래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의 발에서 철문 방향을 본 모습(하천부지 위 공간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위로 경사면을 조성하고, 철조망 하단에 과도히 토사를
 얹고 넓혀서 저희 부부가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좁혔음)



철문에서 저의발 입구 쪽을 본 모습(하천부지 위 공간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위로 최대한 경사면을 조성하고, 철조망 하단에 과도히 토사를 얹고 넓혀서 저희 부부가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좁혔음)

저희 부부가 그동안 민원을 통하여 아들이 하천부지를 파괴하고 경사면을 조성하여 유실을 유도한 의도가 철조망으로 하천부지를 불법점거해온 사실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사실과 우천시나 눈이 온 후 등 겨울에 드나들 때 하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안전사고까지 날 수 있다고 목놓아 애원했음에도 아들의 의도와 똑같이 공사를 하여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반토막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토지주는 발 경계에 철조망을 친 것도 이례적이지만 본건 하천부지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면에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데 아들의 의사를 전폭 수용하여 철조망 하단부를 매우 넓고 높고 두텁게 시작부터 끝까지 제단처럼 쌓아 올려 주었습니다. 이후 2~3회 비가 온 후 지금 현재 다음과 같이 하천부지 곳곳에 유실과 붕괴 현상이 일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 저희 부부는 발에 드나들 수 없고 적지 않은 나이인 저희 부부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비나 눈이 온 후 결빙 등 시기에 다니다가 하천 아래로 추락하여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지경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이후 다시 추가 유실 또는 붕괴는 이때 예정된 것입니다.

2023년 10월 말 현재 하천부지 상황(곳곳 유실, 붕괴)







이와 같이 엉터리 마구잡이 그리고 저희 부부를 표적으로 삼고 차별, 부패 행정을 함으로써 이미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의 밭 바로 아래에 접한 하천부지에 수년 전 보강토로 공사를 해 준 부분입니다. 오른쪽 붉은 박스 안을 보시면 알지만 토지 높이까지 밭 평면에 맞추어 수직으로 쌓아올려 보호해주었습니다. 그곳은 그 어떠한 유실도 없이 해 준 반면에 저의 토지에는 그 어떠한 수해방지 시설이 없어서 밭 안쪽에서부터 엄청난 유실이 있어 토사보강이 시급한 상태에 있는데 원래부터 얼마든지 포크 레인이 드나들 수 있는 하천부지를 드나들 수 없게 고의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농기구, 비료, 퇴비 등은 물론 수확물을 나르기 위한 넓이의 길이 생명인데 이에 대한 부푼 희망을 무참히 유린하였고, 저의 밭 유실부분 토사보강과 추가 유실방지를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60대를 바라보는 저희 부부가 그러한 물건을 나르다 자칫 추락하는 위험에 처하도록 하였고, 모욕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입 당시 불리한 밭 조건을 그대로 영원히 가져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합니다.

저의 밭 아래 이웃 토지 인접 하천 공사



다음 사진은 저의 밭 인접 하천에서 60~70여미터 위 이웃토지주 같은 소유의 다른 필지 인접 하천에 바위를 수직으로 쌓여 튼튼히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저의발 인접 하천에서 60~70여미터 위 이웃토지주 같은 소유의 다른 필지 인접 하천에 수직으로 쌓은 바위

다음은 위 바위 벽면이 떠받들어 지탱하고 있는 바로 위 하천부지(철문 오른쪽)



원래 본건 하천부지(철문 왼쪽)와 쌍둥이 지형으로서 아들의 훼손과 공무원들의 마구잡이 행정이 개입하지 않은 철문 이곳(철문 오른쪽) 부지는 일체 유실이 없이 튼튼히 유지되고 있음

다음은 저의 밭 내부입니다. 오랜 기간 토사가 유실되어 하천방향으로 크게 경사면이 조성되어 있고 크게 파여 밭 구실을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저의 밭과 붙어 있는 하천부지 벽면에는 그 어떠한 유실방지 시설물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 외부에서 토사를 유입하고 포크레인을 들어 공사를 해야만 밭 구실을 하는 부분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표적, 차별, 부패 행정으로 좌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매입한 토지의 이전 소유주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나 오랜 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이웃토지주가 훗날 관리 당국의 무관심과 관리소홀을 이용하여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를 소유할 의사로 철문과 철조망을 높이 둘러 사람들의 접근을 봉쇄해버려서 맹지처럼 보였던 것이지 엄연히 자연스럽게 하천부지로 난 길을 통하여 통행하고 그 토지의 지목이 그 이전부터 밭으로 사람이 하천부지로 드나들면서 경작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토지는 맹지가 아닌 밭을 불법점용으로 맹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들 모두 이웃토지주의 불법점용 민원제기로 인하여 국가가 이웃토지주에게 잃을 뻔한 하천부지를 지켜주었다는 점에 대한 점은 아랑곳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시설과 관련하여 그 위험, 예산낭비, 행정낭비를 예방하고자 진심과 성심으로 건의한 것을 묵살하고, 멸시하며 차별, 편파, 예산낭비 행정을 하는 일이 시정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의 행정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말단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 이들보다 높은 직급에서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이들은 물론 구조적으로 해이하고 부패한 의식구조와 행태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시청(동남구청, 목천읍)이 보여준 소하천 행정은 천안시청 관내에도 차별적, 편파적, 엉터리로 행하여 그 우선순위에 대한 공정을 해치거나,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낭비하였을 개연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저희 부부는 잘못된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노인분들은 관공서와 공무원들의 횡포와 부패에 얼마나 속수무책 당할까 생각하면 너무도 염려스럽습니다.

이상과 같이 천안시청(동남구청, 목천읍) 및 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표적, 차별, 부패 행정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 인식하는 공무원이나 상급자는 단 한 명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본건 고소 수사결과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있기까지 마냥 시간이 흘렀고, 또 그 와중에 저에게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7월에 아들 결혼이 있었고, 남편이 32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얼마전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친정 어머니님 병환, 집안 대소사 등으로 경황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고소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 2023년 10월 30일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알리며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목	진술서 제출(업무방해, 소하천정비법위반)
내용	민원인은 천안동남경찰서에 업무방해, 소하천정비법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는 [REDACTED]입니다. 첨부한 진술서를 담당 조사관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3. 10. 30. 고소인 [REDACTED]
첨부 파일	진술서(10월30일)-경찰서.pdf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0-1135243
접수일시	2023-10-30 10:07:50

이어서 그다음 날인 11월 1일 담당 경찰관이 참고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답변이 왔습니다.

2023-11-06 09:05:09
[REDACTED]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1AA-2311-00135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3-2354사건 관련 첨부 내용 담당 수사관 전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사건은 23. 11. 1 불송치 결정 관련 형사소송법 245조5에 따라 모든 서류와 증거물을 천안지청에 송부하여 검토 결과를 거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천안동남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경사 [REDACTED]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2023년 11월 1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서류 일체를 천안검찰청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담당 경찰관이 10월 30일 이후 진술서를 받은 직후 서둘러 사건결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 급히 검찰에 보내 경찰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인데 이상하게도 8개월간 끌던 수사가 진술서를 제출한 직후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경찰에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을 안 때는 위와 같이 11월 6일입니다. 그다음 날인 11월 7일 동남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처분이유

서 발급신청을 하였더니 민원담당자는 “검찰에 보낸 서류가 경찰로 반환된 상태에 있다.”면서 신청을 받았고, 이에 덧붙여 “만일 검찰에서 아직 반환되지 않았더라면 검찰에서 발급받아야 했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서를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23. 10. 29.

사건번호 2023-002354

제 목 불송치 결정서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합니다.

I. 피의자

1. 가. 나. 목천읍장
2. 가. 나. 유

II. 죄명

- 가. 소하천정비법위반
- 나. 업무방해

III. 주문

1. 피의자 목천읍장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2. 피의자 유 게 대한 범죄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IV.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
- 가.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시설을 이전하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받

POLICE-2023-24309-00821-01755

박 2023-10-31 11:02:40 1 / 4

그동안 천안시청(동남구청, 목천읍)의 차별, 표적, 부패 행정과 현재 하천부지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하느라 10월 30일 제출한 진술서를 위 국민신문고 접수기록과 같이 '2023. 10. 30. 10:07:50' 접수를 했는데 경찰에서 받아본 불송치 결정서 우측 하단에 담당 경찰관의 컴퓨터 입력일시가 '10. 31. 11:02: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술서는 사건 성격을 더 명확히 알 수 있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접수받고도 무시하고 서둘러 급히 사건을 마무리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결정서 우측 상단에 기재된 (컴퓨터 입력 일시 자동기록이 아닌) 타이핑한 대로 기재가 되는 '10월 29일'입니다. 경찰은 사건처리 시스템에 입력만 하지 않았을 뿐 10월 29일 이미 사건처분 결정서를 작성해두고 있었다고 꾸민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왜 이토록 심각한 차별과 부패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소하천 행정 담당 관청의 직무유기와 기강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있음을 실감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 또한 처음부터 엉터리였고, 불송치(혐의없음) 이유서 내용을 보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이 엉터리 내용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은 이웃토지주의 아들 천안시청(동남구청, 목천읍), 동남경찰서가 마치 혼연 일체가 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모든 일이 저희 부부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적반하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농한기로서 적어도 내년 해빙 직후이자 파종 전인 봄철 이전에 포크레인을 들여 저의 밭 내부에서 하천으로 방대하게 유실된 부분을 외부에서 들여온 토사로써 보강해야 하는 공사가 시급한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저희 부부가 고통받고, 오랜 기간 행정력을 낭비하는 책임은 모두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부패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은 저희 부부를 악성 민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울 뿐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텃밭가꾸기(귀촌)를 희망하다 좌절하고 있는 사람 올림